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16
----------	-------

발의연월일 : 2026. 6. 30.

발 의 자 : 허성무 · 윤준병 · 박선원
이정헌 · 권향엽 · 윤종오
김종민 · 김용만 · 서미화
송옥주 · 이훈기 · 전종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국어와 영어 등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어떤 언어를 우선하여 해석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계약할 때 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그대로 국어로 번역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수급사업자가 외국어 계약서의 독소조항이나 법적 누양스를 완벽히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기 연장, 추가 비용 · 위약금 등의 분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외국어 조항의 자구를 우선 적용하며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 혹은 추가 · 변경위탁 계

약시 서면을 국어와 외국어로 작성하였을 때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충되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면을 국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언어로 작성하는 경우 그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충될 때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4. (생략)</p> <p>③ ~ ⑫ (생략)</p>	<p>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서면을 국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언어로 작성하는 경우 그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충될 때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사항</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③ ~ ⑫ (현행과 같음)</p>